

의안번호	제 35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일 (제 279 회)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정윤숙 의원 외 인
발의연월일	2009년 4월 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6
----------	-----

발의 연월일: 2009. 4.

발의자: 정윤숙

1. 제안이유

사회적기업 등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안 제3조)
- 나.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제4조)
-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및 지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라. 사회적기업 등의 시설지원·경영지원·재정지원·우선구매 등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마. 공공서비스 공급과 도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장려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의안전문 :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 붙임

다.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협의됨

라.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1. 제4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2.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심사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노동관서의 사회적기업 업무담당관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 지원
2.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3.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
5. 도와 시·군간 협력
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와 기반 구축
7.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 및 지정) ① 도지사는 사회서

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와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장비 또는 장비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한도는 해당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자장려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장려) 도지사는 지역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도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도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망의 구축·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2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7. 삭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 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 상 회사로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 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